

국 토 교 통 부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하여 종합교통정책관 및 도로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며, 사무분장의 현행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술안전정책관, 물류정책관 및 자동차관리관 하부조직의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공정건설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 등을 위한 공정건설추진팀과 국제민간항공기구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을 총액인건비로 각각 신설하는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 시범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항공정책실 하부 조직의 사무분장을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정책국내 공정건설추진팀을 신설하고, 기술기준과의 명칭을 기술혁신과로 변경(안 제9조제2항, 제3항, 제7항 및 제9항)

나. 교통물류실내 부서간 직제순서 및 사무분장을 조정·현행화하고, 교통정책조정과는 교통정책총괄과로, 대중교통과는 버스정책과로, 신교통서비스과는 모빌리티정책과로, 도시교통과는 생활교통과로, 물류시설정보과는 첨단물류과로, 첨단자동차기술과는 첨단자동차과로 변경(안 제11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조 제10항 및 제13항)

다. 항공정책실내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을 신설하고, 부서간 사무

분장을 조정·현행화하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420호,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사무분장을 명확화하고, 「항공안전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0062호, 2019. 8. 27. 시행)에 따른 지방항공청에 위임된 업무를 반영(안 제12조 제3항, 같은조 제5항 및 제6항, 같은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제28조제4항,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의2제4항)

라. 도로국내 부서별 사무분장을 조정·현행화하고, 간선도로과를 도로건설과로, 도로운영과를 도로관리과로, 첨단도로안전과를 도로시설안전과로, 서울세종고속도로팀을 디지털도로팀으로 변경(안 제1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건설정책과·건설산업과·해외건설정책과·해외건설지원과·기술정책과·기술기준과·건설안전과”를 “건설정책과·건설산업과·해외건설정책과·해외건설지원과·공정건설추진팀·기술정책과·기술혁신과·건설안전과”로, “기술서기관”을 “기술서기관으로,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사항”을 “사항(업역·업종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기준과장”을 “기술혁신과장”으로 한다.

⑦ 공정건설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산업의 업역제도 개선정책의 시행 및 점검·발전에 관한 사항
2. 건설 업종체계 개편 시행 및 점검·발전에 관한 사항
3. 건설사업자별 주력분야 공시제도의 구분·확대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건설 업역·업종체계 개편에 따른 입찰·계약제도 및 실적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발주 요령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종개편 등 고도화에 관한 사항

7.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제도 개선 정책의 시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정책의 시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9.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 등 생애주기 경력 관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운영 및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제11조제3항 중 “교통정책조정과·도시교통과·교통안전복지과·대중교통과·신교통서비스과·물류정책과·물류시설정보과·물류산업과·자동차정책과·첨단자동차기술과”를 “교통정책총괄과·교통안전복지과·버스정책과·모빌리티정책과·생활교통과·물류정책과·첨단물류과·물류산업과·자동차정책과·첨단자동차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정책조정과장”을 “교통정책총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교통과장”을 “생활교통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제21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하고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9호, 제27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교통분야 빅데이터 공통기반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 27. 교통 분야 연구개발의 총괄·조정
- 28.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29.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신교통기술의 지정·보호
- 30. 교통기술의 표준화 및 시범사업의 추진

제11조제5항(중전의 제6항)제14호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중교통과장”을 “버스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교통서비스과장”을 “모빌리티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류시설정보과장”을 “첨단물류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을 “첨단자동차과장”으로 한다.

- 16.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 17.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18. 택시의 수송력 공급 기준에 관한 사항
- 19.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 20. 택시 운수사업자단체의 설립·육성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21. 택시운송사업의 진흥·발전을 위한 현황조사 및 연구·개발
- 22. 통합교통서비스(Mobility as a Service) 활성화에 관한 사항
- 23.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2조제3항 중 “항공정책과·첨단항공과·국제항공과·항공산업과·항공보안과·항공안전정책과·항공운항과·항공기술과·항공교통과·공항정책과·공항안전환경과”를 “항공정책과·첨단항공과·국제항공과·항공산업과·항공보안과·항공안전정책과·항공운항과·항공기술과·항공교통과·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공항정책과·공항안전환경과”로, “기술서기관”을 “기술서기관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제도에 관한 사항

제12조제6항제6호 중 “협력”을 “협력(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지원”을 “지원(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5호 중 “제도”를 “안전제도”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면허”를 “자격증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관리·감독”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조종사”를 “조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항공종사자의 주류등의 섭취·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26. 항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기준 수립

27. 항공안전데이터 수집·처리·분석·활용에 관한 기준 수립 및 데이터분석 총괄

제12조제11항제2호 중 “운항규정”을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6호 및 제7호 중 “항공기”를 각각 “항공기, 경량항공기”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초경량비행장치(무인동력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신고제도

제12조제12항제15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3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의무 및 자율보고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의무·자율보고제도 개선 및 의무보고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공항”을 “공역, 항공로 및 공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항공교통, 항공정보, 항공지도, 공역 및 비행절차 분야(이하 이 항에서 “항행분야”라 한다)”를 “항행분야”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 중 “항행분야”를 “항행분야 및 항공통신 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5호 중 “제4권·제5권·제11권 및 제15권”을 “제4

권(항공지도)·제5권(항공측정단위)·제11권(항공교통업무) 및 제15권(항공정보업무)”으로 하고, 같은 항 제26호 중 “제3권 및 제12권”을 “제3권(항공기상) 및 제12권(수색구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9호를 삭제한다.

1. 항공교통·항공정보·항공지도·공역·비행절차 분야(이하 “항행 분야”라 한다.)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2. 항행분야 기술 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개정

19. 항공교통업무증명 제도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된 국제항공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 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국제 조약의 제정·개정 협상의 지원 및 주요 정책·기준 등 국제의제 관리 및 대응 총괄

3. 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

4.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항행위원회 의제대응 관리 및 주몬트리올대한민국총영사관겸주국제민간항공기구대한민국대표부 활동의 지원

5. 항공안전종합평가의 기획·조정 및 후속조치 총괄

6. 국제표준의 국내이행 관리 및 국제표준 제정·개정 관련 국제기구

와의 대외협력업무 총괄

7.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술협력 및 회원국 공한 접수·배포·관리
8. 항공안전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 등 국제항공 협력사업 및 국제기구 인력 지원

제13조제2항 중 “도로정책과·간선도로과·도로투자지원과·도로운영과·첨단도로안전과 및 서울세종고속도로팀”을 “도로정책과·도로건설과·도로투자지원과·도로관리과·도로시설안전과 및 디지털도로팀”으로, “서울세종고속도로팀장”을 “디지털도로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3호 중 “도로정비기본계획”을 “국가도로망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선도로과장”을 “도로건설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운영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을 “건설사업의 총괄·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수립·조정”을 “수립 및 건설사업의 총괄·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운영과장”을 “도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도로시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량·터널 등 주요구조물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장·단기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노후교량의 개축·보수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량 및 터널 관리기법의 운영·연구 및 발전

5. 위험도로개량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지도·감독
6. 도로병목지점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도로안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8. 도로안전시설의 성능 개선에 관한 사항
9. 사고찾은 곳 개선 및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10. 동물 찾길 사고 저감대책 수립·시행
11. 도로구조 보호를 위한 차량운행제한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도로상 재해대책(설해를 제외한다.) 및 재난 등 대응에 관한 사항
13. 국도상 자전거 도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운행제한차량의 운행허가시스템 및 과태료부과시스템 구축·운영
15. 운행제한단속원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제8항 중 “서울세종고속도로팀장”을 “디지털도로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20호 및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6호까지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등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제정, 표준화계획 수립·운영,

표준화사업, 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

7.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신기술의 도입 및 연구개발
8.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장비의 성능평가 및 인증제도의 운영
9. 도로교통 분야 통행료 전자지불, 자동교통단속 등 교통관리 최적화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추진의 지원
11. 국가교통정보센터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정보교환을 위한 인프라 보안에 관한 사항
13.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전담기관·지정기관·협회 및 단체의 지도·감독
14. 도로교통 분야 전국단위 실시간 종합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정보 안내체계 구축·운영
15. 도로교통 분야 교통정보 요금산정 등 교통정보 유통 및 이용활성화 정책 수립·운영
16.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 및 수출 활성화,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교육, 홍보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2. 디지털도로 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제28조제4항에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전문교육기관 훈련운영기준, 교육훈련체계 변경 및 정기 또는 수시 검사에 관한 사항
22. 전문교육기관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3. 전문교육기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 제33조제3항제16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전문교육기관 훈련운영기준, 교육훈련체계 변경 및 정기 또는 수시 검사에 관한 사항
17. 전문교육기관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8. 전문교육기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 제35조의2제4항에 제57호부터 제5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 전문교육기관 훈련운영기준, 교육훈련체계 변경 및 정기 또는 수시 검사에 관한 사항
58. 전문교육기관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9. 전문교육기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 국토교통부령 제60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3항은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으로 신설되는 공정건설추진팀,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및 디지털도로팀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공정건설추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공정건설추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건설정책과장이 분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중 회원국 공한 접수·배포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제항공과장이, 그 외 사항은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분장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도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도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중 제1호부터 제16호까지

는 도로시설안전과장이, 그 외 사항은 도로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건설정책국) ① (생 략)	제9조(건설정책국) ① (현행과 같 음)
② 건설정책국에 <u>건설정책과 · 건설산업과 · 해외건설정책과 · 해외건설지원과 · 기술정책과 · 기술기준과 · 건설안전과</u> 및 시 설안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 이사관 · 서기관 또는 <u>기술서기 관</u> 으로 보한다.	② ----- <u>건설정책과 · 건설산업과 · 해외건설정책과 · 해외건설지원과 · 공정건설추진 팀 · 기술정책과 · 기술혁신과 · 건설안전과</u> ----- ----- <u>기술서기 관</u> 으로,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서 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u>시설사무관</u> ---.
③ 건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5.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제도 의 개선 · 발전에 관한 <u>사항</u>	5.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제도 의 개선 · 발전에 관한 <u>사항(업 역 · 업종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u>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공정건설추진팀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신 설>	1. <u>건설산업의 업역제도 개선 정책의 시행 및 점검 · 발전에 관한 사항</u>
<신 설>	2. <u>건설 업종체계 개편 시행 및</u>

<u><신 설></u>	<u>점검·발전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3. 건설사업자별 주력분야 공시</u> <u>제도의 구분·확대 및 운영·</u> <u>평가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4. 건설 업역·업종체계 개편에</u> <u>따른 입찰·계약제도 및 실적</u> <u>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5.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을</u> <u>촉진하기 위한 발주 요령 운</u> <u>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6.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의 전</u> <u>문성 강화를 위한 업종개편</u> <u>등 고도화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7.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제도</u> <u>개선 정책의 시행 및 점검에</u> <u>관한 사항</u>
<u><신 설></u>	<u>8.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u> <u>정책의 시행 및 점검에 관한</u> <u>사항</u>
<u><신 설></u>	<u>9.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u> <u>분 등 생애주기 경력 관리 및</u> <u>발전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운</u> <u>영 및 개선·발전에 관한 사</u> <u>항</u>

⑦ (생 략)

⑧ 기술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7. (생 략)

⑨ · ⑩ (생 략)

제11조(교통물류실) ① · ② (생 략)

③ 교통물류실에 교통정책조정과 · 도시교통과 · 교통안전복지과 · 대중교통과 · 신교통서비스과 · 물류정책과 · 물류시설정보과 · 물류산업과 · 자동차정책과 · 첨단자동차기술과 및 자동차운정보험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교통정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1. (생 략)

⑤ 도시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신 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기술혁신과장-----
-----.

1. ~ 17. (현행과 같음)

⑩ · ⑪ (현행 제9항 및 제10항과 같음)

제11조(교통물류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교통정책총괄과 · 교통안전복지과 · 버스정책과 · 모빌리티정책과 · 생활교통과 · 물류정책과 · 첨단물류과 · 물류산업과 · 자동차정책과 · 첨단자동차과-----

-----.

④ 교통정책총괄과장-----
-----.

1. ~ 21. (현행과 같음)

⑧ 생활교통과장-----
-----.

1. ~ 8. (현행과 같음)

9. 교통분야 빅데이터 공통기반시스템의 구축 · 운영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9. ~ 19. (생략)	10. ~ 20. (현행과 같음)
20. <u>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u>	21. <u><삭 제></u>
21. <u>택시운송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u>	22. <u><삭 제></u>
22. <u>택시의 수송력 공급 기준에 관한 사항</u>	23. <u><삭 제></u>
23. <u>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u>	24. <u><삭 제></u>
24. <u>택시 운수사업자단체의 설 립·육성 및 지도·감독에 관 한 사항</u>	25. <u><삭 제></u>
25. <u>택시운송사업의 진흥·발전 을 위한 현황조사 및 연구· 개발</u>	26. <u><삭 제></u>
<u><신 설></u>	27. <u>교통 분야 연구개발의 총괄 · 조정</u>
<u><신 설></u>	28. <u>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u>
<u><신 설></u>	29. <u>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신교통기술의 지정· 보호</u>
<u><신 설></u>	30. <u>교통기술의 표준화 및 시범 사업의 추진</u>
⑥ <u>교통안전복지과장은 다음 사</u>	⑤ -----

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14. 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15. ~ 24. (생략)

⑦ 대중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6. (생략)

⑧ 신교통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11. 교통 분야 연구개발의 총괄
· 조정

12.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13.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신교통기술의 지정·
보호

14. 교통기술의 표준화 및 시범
사업의 추진

1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1. ~ 13. (현행과 같음)

14. 한국교통안전공단-----

15. ~ 24. (현행과 같음)

⑥ 버스정책과장-----
-----.

1. ~ 26. (현행과 같음)

⑦ 모빌리티정책과장-----
-----.

1. ~ 10.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5. (현행과 같음)

16.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17.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8. 택시의 수송력 공급 기준에
관한 사항

<u><신 설></u>	19. <u>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u>
<u><신 설></u>	20. <u>택시 운수사업자단체의 설립·육성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
<u><신 설></u>	21. <u>택시운송사업의 진흥·발전을 위한 현황조사 및 연구·개발</u>
<u><신 설></u>	22. <u>통합교통서비스(Mobility as a Service) 활성화에 관한 사항</u>
<u><신 설></u>	23. <u>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u>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 <u>물류시설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⑩ <u>첨단물류과장</u>-----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⑪·⑫ (생 략)	⑪·⑫ (현행과 같음)
⑬ <u>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⑬ <u>첨단자동차과장</u>-----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⑭ (생 략)	⑭ (현행과 같음)
제12조(항공정책실) ①·② (생 략)	제12조(항공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항공정책실에 <u>항공정책과</u>·	③ ----- <u>항공정책과</u>·

첨단항공과 · 국제항공과 · 항공산업과 · 항공보안과 · 항공안전정책과 · 항공운항과 · 항공기술과 · 항공교통과 · 공항정책과 · 공항안전환경과 및 항행시설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생략)

⑤ 첨단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신설>

⑥ 국제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항공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

7. ~ 9. (생략)

10.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활동의 지원

11. 항공 관련 국제조약의 제정

첨단항공과 · 국제항공과 · 항공산업과 · 항공보안과 · 항공안전정책과 · 항공운항과 · 항공기술과 · 항공교통과 ·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 공항정책과 · 공항안전환경과-----

----- 기술서기관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12. (현행과 같음)

13.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제도에 관한 사항

⑥ -----
-----.

1. ~ 5. (현행과 같음)

6. 항공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7. ~ 9. (현행과 같음)

<삭제>

11. 항공 관련 국제조약의 제정

· 개정 협상의 지원

12. ~ 17. (생략)

⑦ ~ ⑨ (생략)

⑩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및 경량항공기 제도의 총괄

6. · 7. (생략)

8. 항공안전종합평가의 기획 · 조정 및 후속조치 총괄

9.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권(항공종사자 면허), 제2권(항공규칙) 및 제19권(안전관리)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 · 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10. 국제표준의 국내이행 관리 및 국제표준 제정 · 개정 관련 국제기구와의 대외협력업무 총괄

11. 항공안전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 등 국제항공 협력사업

· 개정 협상의 지원(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2. ~ 17. (현행과 같음)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
-----.

1. ~ 4. (현행과 같음)

5. -----

-- 안전제도-----

6. · 7. (현행과 같음)

<삭 제>

9. -----
----- 자격증명-----

<삭 제>

<삭 제>

및 국제기구 인력 지원

12.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관리·감독

13. (생략)

14.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조종사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15. ~ 21. (생략)

22. 항공종사자의 약물·알코올 및 마약사용의 금지기준 수립

23. ~ 25. (생략)

<신설>

<신설>

⑪ 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운항규정의 인가 및 신고

3. ~ 20. (생략)

⑫ 항공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12. -----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현행과 같음)

14. -----

----- 조종사 및 -----

15. ~ 21. (현행과 같음)

22. 항공종사자의 주류등의 섭취·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23. ~ 25. (현행과 같음)

26. 항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기준 수립

27. 항공안전데이터 수집·처리·분석·활용에 관한 기준 수립 및 데이터분석 총괄

⑪ -----

-----.

1. (현행과 같음)

2.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3. ~ 20. (현행과 같음)

⑫ -----

-----.

1. ~ 5. (현행과 같음)

6. 항공기의 등록 및 저장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7. 항공기의 등록·저장 등 관리

<신 설>

8. ~ 14. (생략)

15. 정비규정의 인가 및 신고

16. (생략)

⑬ 항공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신 설>

3. (생략)

4. 항공교통업무상의 의무 및 자율보고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 7. (생략)

8. 항공정보관리체계(AIM)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항공교통흐름관리(ATFM)에

6. 항공기, 경량항공기-----

7. 항공기, 경량항공기-----
--

7의2. 초경량비행장치(무인동력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신고제도

8. ~ 14. (현행과 같음)

<삭 제>

16. (현행과 같음)

⑬ -----
-----.

1. 항공교통·항공정보·항공지도·공역·비행절차 분야(이하 “항행분야”라 한다.)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2. 항행분야 기술 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개정

3. (현행과 같음)

4. 항공교통업무상의 의무·자율보고제도 개선 및 의무보고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5. ~ 7.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관한 사항

10. 수색·구조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 및 수색·구조 지원

관련 관계 기관 협의

11. (생략)

12. 공항의 표준 출발·도착 비

행절차 등의 승인

13. 항공교통업무·비행절차·

공역 관련 기술 개발 및 향상

에 관한 사항

14. ~ 18. (생략)

19. 항공교통업무 제공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및 운영기준의

수립·시행

20. 항공교통업무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1. 항공교통, 항공정보, 항공지

도, 공역 및 비행절차 분야

(이하 이 항에서 "항행분야"

라 한다)의 법령·규정의 제

정·개정 및 규정 승인에 관

한 사항

22. 항행분야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안전감독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안전감독관 자격관리

에 관한 사항

<삭 제>

11. (현행과 같음)

12. 공역, 항공로 및 공항-----

<삭 제>

14. ~ 18. (현행과 같음)

19. 항공교통업무증명 제도에

관한 사항

<삭 제>

21. 항행분야-----

22. 항행분야 및 항공통신 분야

23. 항행분야 안전 관련 의무보

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4. 항공고정통신 및 항공이동

통신 분야의 안전감독 규정

의 제정·개정, 안전감독 계

획의 수립·시행 및 안전감

독관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25.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4권·제5권·제11권 및 제1

5권에 따른 국제표준에 관한

사항

26.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3권 및 제12권에 따른 국제

표준 이행 및 채택을 위한 관

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27.·28. (생략)

29. 항공교통관제 관련 안전조

사에 관한 사항

30. (생략)

<신설>

<신설>

<삭제>

<삭제>

25. ----- 부속서

제4권(항공지도)·제5권(항공

측정단위)·제11권(항공교통

업무) 및 제15권(항공정보업

무)-----

--

26. ----- 부속서

제3권(항공기상) 및 제12권(수

색구조)-----

27.·28. (현행과 같음)

<삭제>

30. (현행과 같음)

⑭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

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된

국제항공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u><신 설></u>	<u>2. 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국제 조약의 제정·개정 협상의 지원 및 주요 정책·기준 등 국제의제 관리 및 대응 총괄</u>
<u><신 설></u>	<u>3. 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국제 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u>
<u><신 설></u>	<u>4.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항행위원회 의제대응 관리 및 주몬트리올대한민국총영사관 겸주국제민간항공기구대한민국대표부 활동의 지원</u>
<u><신 설></u>	<u>5. 항공안전종합평가의 기획·조정 및 후속조치 총괄</u>
<u><신 설></u>	<u>6. 국제표준의 국내이행 관리 및 국제표준 제정·개정 관련 국제기구와의 대외협력업무 총괄</u>
<u><신 설></u>	<u>7.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술협력 및 회원국 공한 접수·배포·관리</u>
	<u>8. 항공안전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 등 국제항공 협력사업 및 국제기구 인력 지원</u>
⑭ (생략)	⑮ (현행 제14항과 같음)
⑯·⑰ (생략)	⑯·⑰ (현행과 같음)
제13조(도로국) ① (생략)	제13조(도로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로국에 도로정책과 · 간선도로과 · 도로투자지원과 · 도로운영과 · 첨단도로안전과 및 서울세종고속도로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서울세종고속도로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도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13.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④ 간선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일반국도 운영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시행

3. ~ 8. (생략)

9.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계획 수립 · 조정

10. ~ 11. (생략)

⑤ (생략)

⑥ 도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② ----- 도로정책과 · 도로건설과 · 도로투자지원과 · 도로관리과 · 도로시설안전과 및 디지털도로팀-----

----- 디지털도로팀장-----

③ -----

1. ~ 12. (현행과 같음)

13. 국가도로망종합계획-----

④ 도로건설과-----

1. (현행과 같음)

2. 일반국도 건설사업의 총괄 · 조정

3. ~ 8. (현행과 같음)

9.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계획 수립 및 건설사업의 총괄 · 조정

10. ~ 11.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도로관리과-----

분장한다.

1. ~ 12. (생략)

⑦ 첨단도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신설>

3. 교량 및 터널 관리기법의 운영·연구 및 발전

4. 위험도로개량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지도·감독

5. 도로병목지점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도로안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신설>

<신설>

<신설>

7. 도로구조 보호를 위한 차량 운행제한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 ~ 12. (현행과 같음)

⑦ 도로시설안전과장-----
-----.

1. ~ 2. (현행과 같음)

3. 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량 및 터널 관리기법의 운영·연구 및 발전

5. 위험도로개량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지도·감독

6. 도로병목지점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도로안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8. 도로안전시설의 성능 개선에 관한 사항

9. 사고 잦은 곳 개선 및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10. 동물 찾길 사고 저감대책 수립·시행

11. 도로구조 보호를 위한 차량 운행제한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로상 <u>재해대책에 관한 사항</u>	12. 도로상 <u>재해대책(설해를 제외한다.) 및 재난 등 대응에 관한 사항</u>
9. 국도상 <u>자전거 도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신 설></u>	13. 국도상 <u>자전거 도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신 설></u>	14. <u>운행제한차량의 운행허가시스템 및 과태료부과시스템 구축·운영</u>
10. <u>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u>	15. <u>운행제한단속원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삭 제></u>
11. <u>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등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삭 제></u>
12. <u>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u><삭 제></u>
13. <u>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제정, 표준화계획 수립·운영, 표준화사업, 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u>	<u><삭 제></u>
14. <u>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신기술의 도입 및 연구개발</u>	<u><삭 제></u>

15. <u>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 체계 기술·장비의 성능평가 및 인증제도의 운영</u>	<u><삭 제></u>
16. <u>도로교통 분야 통행료 전자 지불, 자동교통단속 등 교통관 리 최적화에 관한 사항</u>	<u><삭 제></u>
17. <u>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도로교통 분야 지 능형교통체계 사업추진의 지 원</u>	<u><삭 제></u>
18. <u>국가교통정보센터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u>	<u><삭 제></u>
19. <u>도로교통 분야 첨단교통도 시 구축 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u>	<u><삭 제></u>
20. <u>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 체계 관련 전담기관·지정기 관·협회 및 단체의 지도·감 독</u>	<u><삭 제></u>
21. <u>도로교통 분야 전국단위 실 시간 종합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정보 안내체계 구축·운 영</u>	<u><삭 제></u>
22. <u>도로교통 분야 교통정보 요 금산정 등 교통정보 유통 및 이용활성화 정책 수립·운영</u>	<u><삭 제></u>

23.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

체계 관련 산업 및 수출 활성화,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 교육, 홍보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⑧ 서울세종고속도로팀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1. ~ 3. (생 략)

4.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5. 투자위험분담 방식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제도 개선에 관
한 사항

<신 설>

<삭 제>

⑧ 디지털도로팀장-----
-----.

1.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
계 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
한 사항

2.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
계기본계획 등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
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7. ~ 19. (현행 제1호부터 제3
호까지와 같음)

<삭 제>

<삭 제>

6.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
계 표준 제정, 표준화계획 수립·운영, 표준화사업, 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7.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신기술의 도입 및 연구개발

8.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장비의 성능평가 및 인증제도의 운영

9. 도로교통 분야 통행료 전자지불, 자동교통단속 등 교통관리 최적화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추진의 지원

11. 국가교통정보센터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정보교환을 위한 인프라 보안에 관한 사항

13.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전담기관·지정기관·협회 및 단체의 지도·감독

14. 도로교통 분야 전국단위 실시간 종합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정보 안내체계 구축·운영

<신 설>

<신 설>

6.·7. (생 략)

<신 설>

제28조(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
국) ① ~ ③ (생 략)
④ 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0.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15. 도로교통 분야 교통정보 요
금산정 등 교통정보 유통 및
이용활성화 정책 수립·운영

16.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
체계 관련 산업 및 수출 활성
화,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 교육, 홍보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0.·21. (현행 제6호 및 제7호
와 같음)

22. 디지털도로 산업 발전에 관
한 사항

제28조(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
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20. (현행과 같음)

21. 전문교육기관 훈련운영기
준, 교육훈련체계 변경 및 정
기 또는 수시 검사에 관한 사
항

22. 전문교육기관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3. 전문교육기관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승인 및 변경승인에

<신 설>

57. 전문교육기관 훈련운영기
준, 교육훈련체계 변경 및 정

<신 설>

<신 설>

⑤·⑥ (생 략)

국토교통부령 제607호 국토교통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
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
설되는 서울세종고속도로팀은
2022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②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서울세종고속도로팀장이 분장
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
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
터 서울세종고속도로팀장이 분

기 또는 수시 검사에 관한 사
항

58. 전문교육기관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9. 전문교육기관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⑤·⑥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령 제607호 국토교통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삭 제>

장하는 사항은 도로정책과장이 분장한다.	
--------------------------	--